

2019 3월 8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농촌산업과 김신재과장(044-201-1581), 정혜영사무관(1590)/ 제공일: 3월 7일(총 6매)

걱정없이 농사짓고 걱정하고 소비하는 나라

농어촌민박의 안전관리 제도개선 추진 - 농어촌민박사업자 안전관리 의무, 신고요건 강화 -

《 주 요 내 용 》

◆ 농식품부, 농어촌민박 사업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민박 난립을 방지하는 농어촌민박 제도개선 확정

<안전강화>

- ① (안전기준) 난방안전 기준 신설 + 소방안전 기준 보완
- ② (점검의무) 사업자가 전기안전점검확인서와 가스공급업자의 안전 점검표를 매년 1회 지자체 제출 의무화
- ③ (경보기설치) 일산화탄소경보기와 가스누설경보기 설치 의무화
- ④ (난방시설) 난방시설 현황을 농어촌민박 관리대장에 기입
- ⑤ (안전시설) 소규모 숙박시설에 필요한 소방시설 설치 규정
- ⑥ (안전교육) 사업자의 소방·안전 교육 이수의무 강화(연 1시간 → 2)

<제도개선>

- ① (거주기간) 관할 시·군·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만 민박업 허용
- ② (임대주택) 임차한 주택을 활용한 민박업 제한
- ③ (민박표시) 농어촌민박임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로고부착 의무화

◆ 안전관리 강화와 제도개선을 통해 농어촌민박이 농어촌주민의 다양한 소득원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

- 농림축산식품부(장관 이개호, 이하 농식품부)는 농어촌민박 사업장의 안전시설과 사업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고, 민박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.
- 제도개선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농어촌민박 사업장의 안전관련 시설을 숙박업에 준하는 수준으로 갖추도록 하고, 신규 민박 사업자의 신고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다.
- 금번 제도개선은 지난 12월 강릉펜션사고 직후 이와 같은 참사의 재발을 막고, 제도 도입취지에 맞는 농어촌민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것으로, 지자체, 안전·학계 등 관련 전문가, 이해관계자 등과 다양한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완성되었다.
- 농식품부는 제도개선을 통해 농어촌민박의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, 농어촌민박 제도가 당초의 취지대로 농촌 경제활성화와 농촌주민의 다양한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.

① 안전강화 : 농어촌민박의 안전관리를 숙박업에 준하도록 강화

- 강릉펜션사고와 같은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농어촌민박의 안전관련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.
- (안전기준)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가스·기름·전기·연탄 보일러 등 난방시설과 화기취급처에 관한 관리 안전 기준을 신설한다.
 - 난방시설은 정기적으로 점검 관리하고, 화기취급처는 환기가 잘 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.

- (점검의무) 사업자가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전기안전점검확인서와 가스공급업자의 안전점검표를 매년 1회 지자체에 제출토록 의무화한다.
 - 농어촌민박은 주택을 활용하는 사업으로 그 점검 기준에 따라 3년마다 전기안전점검을 받고 있으나,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업하여 전기사업법을 개정하여 매년 점검받도록 할 계획이다.
 - 또한, 가스점검은 「액화석유가스법」에 따라 가스공급자가 하도록 이미 규정되어 있으나 농어촌민박이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어려웠기 때문에 사업자의 안전점검표 제출을 새롭게 의무화한다.
- (경보기설치) 가스누출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가스·기름·연탄 등 연소난방시설에 대해 일산화탄소경보기와 가스누설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한다.
- (난방시설) 난방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농촌민박사업자 관리대장에 가스, 기름, 화목, 연탄, 전기보일러 등 난방시설 현황을 기입토록 한다.
- (안전시설) 소규모 영세 농어촌민박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면적 150㎡을 기준으로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차등 적용한다.
 - 소규모 숙박시설에 필요한 소방시설에 준하는 휴대용 비상조명등, 자동확산소화장치 등의 설치를 면적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의무화하되,
 - 150㎡이하의 민박사업장은 피난표지만 추가하고, 150㎡초과 사업장은 완강기(3층이상)를 추가하되 신규건물의 경우에는 피난구 유도등을 설치하고 기존건물은 피난표지를 설치하도록 한다.

- 150㎡이하에 평균 객실 2개를 기준으로 할 때 총 안전시설 설치 비용은 약 16만원 내외로 큰 비용부담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.

○ (안전교육) 사업자의 소방·안전 교육시간을 현행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리고, 농어촌민박 운영 전에 소방·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신고 시 교육 수수료증 제출 규정을 신설한다.

□ 강화된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, 사업정지, 사업장폐쇄 등의 처벌근거도 함께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.

② 신고요건강화 : 농어촌민박 신규사업자 요건 및 의무 강화

○ (거주기간) 현재는 거주기간 제약 없이 사업신고를 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민박사업장을 관할하는 시·군·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만 민박업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거주요건을 신설한다.

- 신규사업자에게 해당지역 농촌 문화를 이해하고 사업 준비하는 기간을 설정하여 농어촌민박이 제도의 취지대로 농촌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.

* (현행)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 → (개선)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 지역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주민

○ (임대주택) 하절기 휴가철 등 단기간(6개월 이내) 운영 후 폐업에 따른 안전관리 소홀문제를 차단하고 사고 등에 따른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임차한 주택을 활용한 민박사업을 제한한다.

* (현행) 주택소유권 +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용권 증명 서류 제출 → (개선) 주택 소유권 증명 서류 제출

- (민박표시)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업정체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농어촌민박 로고부착을 의무화한다.
 - 소비자와 안전점검자가 농어촌민박 사업장임을 알 수 있도록 로고를 출입문에 게재하고, 홈페이지와 홍보물에도 표시하도록 한다.
- 농어촌정비법 외 관련법령 및 규정 개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올해 안에 개정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 - 농어촌민박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시급한 문제이므로 안전관련 규정은 올 하반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되, 신규 요건 규정은 규제강화로 인한 불합리함이 없도록 내년 하반기에 시행되도록 할 예정이다.

참 고

농어촌민박 제도개선안 정리

	현 행	개 선	예정 시행 시기	비고
안전 관리 강화	■ 1.숙박위생+2.식품위생+3.소방 안전+4.그 밖의 사항	■ 1.숙박위생+2.식품위생+3.소방 안전+4.난방시설·화기취급처 안전+5. 그 밖의 사항	'19년 하반기	보완
	■ 점검확인서 제출의무 없음	■ 매년 전기·가스점검확인서 제출 의무화		신규
	■ 가스경보기설치 의무 없음	■ 가스누설경보기 및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		신규
	■ 해당없음	■ 가스, 기름, 화목, 연탄, 전기보일러 등 해당 난방시설 표시		신규
	■ 소화기, 단독경보형감지시 설치	■ 휴대용비상조명등, 자동확산 소화장치, 피난유도등이나 표지, 완강기 설치 등 의무화		보완
	■ 소방·안전, 위생, 서비스 교육 1 시간씩 실시 ■ 신고 전 교육 수수료 의무 없음	■ 소방·안전 2시간, 위생, 서비스 1시간 교육 실시 ■ 신고 전 교육 수수료 의무화		보완 및 신규
신고 요건 강화	■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	■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주민	'20년 하반기	신규
	■ 신고 시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제출	■ 주택 소유권 증명서류 제출		신규
	■ 해당없음	■ 농어촌민박임을 알릴 수 있는 표시 의무화	'19년 하반기	신규